

<p>제2021-48호 2021년 3월 15일(월)</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경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공 고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575호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여수시 조례 제1576호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6
○ 여수시 조례 제1577호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여수시 조례 제1578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여수시 조례 제1579호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 여수시 조례 제1580호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여수시 조례 제1581호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44
○ 여수시 조례 제1582호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6
○ 여수시 조례 제1583호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여수시 조례 제1584호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회								
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 월 15 일

여 수 시 장

권 오봉



여수시 조례 제1575호

붙임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특별위원회) ① (생략)</p> <p>② 의회는 <u>예산안과 결산</u>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③ ~ ⑥ (생략)</p>	<p>제7조(특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예산안·결산·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u>-----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5일

여수시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576호

붙임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여수시 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① 여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수시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구성) ① 청소년 의회 의원은 1회에 2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여수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 추천, 청소년단체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한다.

③ 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동안 여수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 월 15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인



여수시 조례 제1577호

붙임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를 “여수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하고, “운용 관리”를 “운용·관리”라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에”를 “시장은”으로,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 을”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하며 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 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으 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및 읍·면·동 장
2. 여수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제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를 “날의 연도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8조에 따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가 배정된 물품인지의”로,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를 “심사를 받지 않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성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서당경비에 관한”을 “일상경비에 의한”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여수시 기부금품모집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심사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증사실”을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로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결정될”을 “결정되었을”으로, “당해 기증자에게”를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등재후”를 “기록된 후”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를 “그 밖의”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7. 수선이 필요하지만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을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물품에 대하여는”을 “물품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처분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내구연수”를 “그 밖에 내구 연수”로, “재활용”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4. 수선이 필요하지만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16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2천만원이상”을 “2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을 “드는 비용을 보상하면 남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을 “하였을”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제2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일물품”을 “동일 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를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을 “각 호에 따른 총량 중”으로, “2천만원이상”을 “2천만원 이상”으로,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를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를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인수한”을 “인수하였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년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호”을 “각 호”로, “물품에 대하여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을 “물품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된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공용품중”을 “공용품 중”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고 기타”를 “금고,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안도”를 “인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분실·훼손 보고)”로 하고, 제1항 및 제3항 중 본문의 “망실·훼손”을 각각 “분실·훼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구분”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망실”을 “분실”로, “물품”을 “대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

서 중 “수리하여”를 “수리해”로, “제1호의 예에 의한다”를 “제1호에 따른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식에 의거 다음”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을 “제1항에 따른 장부 중”으로, “도서대장등”을 “도서대장 등”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장부를 전산으로 기록할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으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을 “(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을 “제1항에도”로 한다.

① 영 제 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를 “검사 시”로, “없는”을 “없을”로, “자로 하여금”을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선 기타의”를 “수선 · 그 밖의”로, “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 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수행하고, 필요 시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한”을 “하였을”로, “의한”을 “따라”로, “2부”를 “2통”으로, “1부를 당해”를 “1통을 해당”으로, “1부는”을 “1통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 중 “경질된” “변경되었을”로,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를 “발령일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32조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타 직원에 의한 인계)”를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를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이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중 “기구개편으로 인하여”를 “기구개편으로”로,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를 “소속이 바뀌면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0조를 준용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제5조 관련)

○ 물품의 종류

-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 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 중**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
- ③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 중**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 중**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u>여수시(이하 “시”라 한다)</u>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u>여수시</u>-----</p> <p>-----</p> <p>-----</p> <p>-----</p> <p>-----</p> <p>-----</p> <p>-----</p>
<p>제2조(관리책임) ① <u>시장은</u>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u>운용 관리</u>하여야 한다.</p> <p>② <u>시장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에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u>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u>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u>운용·관리</u>-----.</p> <p>② <u>시장은</u> -----</p> <p>-----</p> <p>-----</p> <p>-----</p> <p>---(<u>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u>)을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제3항에 따른</u> -----</p> <p>-----</p> <p>-----</p>
<p>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u>기타</u>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p> <p>-----</p> <p>----- <u>그 밖의</u> -----</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u>공유</u></p>	<p>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p> <p>----- 「<u>공유</u></p>

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과장)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 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사람.

1.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

2. 여수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제5조(물품의 분류) -----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② ----- 날의 연도로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제8조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가 배정된 물품인지의-----.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
입) ① 관서당경비에 관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
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
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
입하여야 한다.

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
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
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
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
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여수시 기부금품모집 심사위원
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② ----- 심사를 받
지 않고-----
-----.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
-----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
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
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
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
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
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
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
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 라 한다)-----
-----.

②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될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생략)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략)
4.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

③ 기부심사위원회-----
-----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 시장-----.

④ ----- 제3항에 따라 ----- 결정되었을 -----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

제14조(물품의 가격) -----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 더한 금액. -----

3. (현행과 같음)
4. ----- 따른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록된 후 -----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
리가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
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
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
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1.~6. (생략)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
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
하는 물품

2.·3. (생략)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
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
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
정)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그 밖의 -----
----- 따라 -----

1.~6. (현행과 같음)

7. 수선이 필요하지만 수선하는
것이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② 제1항에 따른 -----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물품은 -----
-----.

1. ----- 긴급처분이 필요한

2.·3. (현행과 같음)

4. 수선이 필요하지만 수선하는
것이 -----

5. 그 밖에 내구 연수-----
재활용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

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

-- 2천만원 이상인 -----.

④ 제1항에 따른 -----

----- 따른 -----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드는 비용을 보상하면 남는 금액-----

2.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하였을 -----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2 이상 -----

3. 동일 물품-----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생략)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

④ -----

-----, -----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
----- 2천만원 이상인 -----

-----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 따라 -----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인수하였을 -----
-----.

⑧ ----- 연 2회(4
월, 9월) -----

-----.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

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한 때에는 물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생략)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분실·훼손-----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 다음 각 호-----
-----.

1. ----- 분실----- 대품-----
-----.

2. -----
----- . ----- 수리-----
----- 제1호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

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 행정기관 포함)이, 기타 소속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

른 장부 중-----
----- 도서대장 등-----
-----, 제11조에 따른 -----

-----.

③ 제1항에 따른 -----

-----.

④ 제1항에 따라 장부를 전산으로 기록할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으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

----- 증명서류 -----
-----.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

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 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검사 시 -----

----- 없을 -----
----- 사람
이 -----.

② ----- 수선·그 밖의
----- 물품출납원(분임물
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
품출납원)이 수행하고, 필요시 회
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 -----
----- 제28조제1항에 따라
----- 하였을 -----
----- 따라 ----- 2
통 ----- 1통을 해당 -----

----- 1통은 -----
-----.

② -----
해당 -----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다.

제33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신 설>

-----.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 변경되었을 -----
발령일부터 5일 이내-----
-----.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
-----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사람이 제32조에 따른 -----
-----.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기구개편으로

----- 소속이 바뀌며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제35조(시행규칙) (생략)

「지방재정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현행 제35조와
같음)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월 15일

여수시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578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72명이며”를 “1,910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43명”을 “1,88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910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864	-					
2급							
3급	1	1					
4급	11	6	1	2	2		
5급	84	35	3	8	10	1	27
6급 이하 계	1,765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1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	-					
연구직 계	11	-					
연구관							
연구사	11	-					
지도직 계	33	-					
지도관							
지도사	33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연구·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일반직 직속기관 4급·5급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복수정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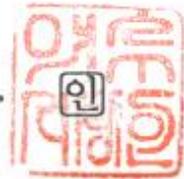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872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843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910</u> 명이며 ----- --.</p> <p>1. ----- <u>1,881명</u></p> <p>2. (현행과 같음)</p>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문화
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 월 15 일

여 수 시 장 권 오봉



여수시 조례 제1579호

붙임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2021년”을 “2026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체육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 월 15 일

여 수 시 장

권 오봉



여수시 조례 제1580호

붙임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받고,”를 “받아”로 하고 “사람을”을 “자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용권”을 “이용권”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이용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연습)이용료(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구분 시설별		일반인	청소년, 군인, 병역명문가예 우대상자	국가유공자등 (비고 제3호 기목부터 이목까지의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위탁세대, 세 자녀 이상 가구, 장기기증자 및 장 기기증희망등록자,	경로우대자, 어린이, 유아, 장애인	비 고
주경기장	천연	50,000	40,000	25,000	면제	구장당
	보조	40,000	32,000	20,000	〃	〃
보조구장	천연	30,000	24,000	15,000	〃	〃
	보조	25,000	20,000	12,500	〃	구장당 (복합구장 포함)
축구장(국동,진모)		30,000	24,000	15,000	〃	구장당
체 육 관		1,500	1,200	750	〃	1명당 (다목적 체육관 포함)
야구경기장		30,000	24,000	15,000	〃	구장당 (리틀야구장포함)
실내야구연습장		20,000	16,000	10,000	〃	실내이용기준
인라인롤러경기장		1,500	1,000	750	〃	1인당
테니스장 (1면당)	실외천연코 트	10,000	8,000	5,000	〃	1면당
	실외하드코 트	10,000	8,000	5,000	〃	〃
	실내하드코 트	15,000	12,000	7,500	〃	〃
족 구 장(실내)		10,000	8,000	5,000	〃	〃
게이트볼장		10,000	8,000	5,000	〃	〃
그라운드골프장		25,000	20,000	12,500	“	구장당
풋살장		25,000	20,000	12,500	“	“
유 도 장		10,000	8,000	5,000	〃	〃
씨 림 장		10,000	8,000	5,000	〃	〃
국 궁 장		1,500	1,200	750	〃	1면당
장애인 국민체 육센터	체력 측정실	/	/	/	/	장애인에 한함
	체력 단련실	/	/	/	/	〃
	장애인 목욕탕	/	/	/	2,000	〃
수영장	회원권(월)	60,000	48,000	30,000	30,000	강습료 : 10,000/월
	1회사용	4,000	3,200	2,000	1,500	

비고

1. 이용시간 :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초과시간 1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부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하계의 경우 19:00~23:00, 동계의 경우 18:00~22:00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료는 위 이용료의 150%로 한다.
3. 다음의 각 목의 사람은 일반인 이용료의 50%를 감경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아.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4. 수영장
 - 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요금의 15%를 감경한다.
 - 나. 단체입장 감경이용료는 1회 사용 시 일반인 3,000원, 청소년·군인·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1,500원으로 한다.
 - 다. 수영장 내 헬스장 사용료 및 에어로빅·요가 강습료는 각각 월 35,000원으로 하며, 세 가지(헬스장, 요가, 에어로빅)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강습료를 감경하여 월 80,000원으로 한다.(수영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제외한다)
5. 테니스장
 - 가. 테니스장(실외코트에 한정한다)의 월 회원권 요금은 일반인 40,000원, 청소년·군인 30,000원으로 한다. 다만, 테니스 강습을 받는 사람의 경우의 월 회원권 요금은 일반인 월 60,000원, 일반인 외 사람은 월 48,000원으로 한다.
 - 나. 테니스 강습료는 일반인 월 90,000원, 일반인 외 사람은 월 72,000원으로 한다.
6.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가. 여수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다만, 다목적체육관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다)
 - 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유아는 장애인목욕탕 이용 시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 다. 장애인목욕탕 중 가족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하지절단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동반가족(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한다) 1명의 사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감면대상자일 경우 동반가족(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포함한다)도 감면대상자에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u> <u>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사용자”란 제5조제3항에 따라 <u>사용허가</u>를 받고,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u>사람</u>을 말한다.</p> <p>4. (생략)</p> <p>제5조(이용허가 등) ① (생략) ② 주민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u>사용권</u>을 교부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 ④ (생략)</p> <p>제8조(<u>사용료의 감면</u>) ① · ② (생략)</p> <p><u><신 설></u></p>	<p><u>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u> <u>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받아</u>----- ----- <u>자</u>를 -----.</p> <p>4. (현행과 같음)</p> <p>제5조(이용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이용권</u>-----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u>이용료 등의 감면</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일반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u></p> <p>1.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인재
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 월 15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81호

붙임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부.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여수시 인재육성기금조성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 월 15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82호

붙임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감시·계도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 월 15 일

여 수 시 장 권 오봉



여수시 조례 제1583호

붙임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축산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생 략)</p> <p>나. 「<u>축산법</u>」 및 「<u>축산물 위생관리법</u>」에 따른 축산물로서 「<u>학교급식법 시행규칙</u>」의 <u>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축산물</u></p> <p>다. ~ 마. (생 략)</p> <p>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유기축산물, 「<u>축산법</u>」에 따른 <u>무항생제축산물</u>로서 「<u>학교급식법 시행규칙</u>」의 <u>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축산물</u></p> <p>다. ~ 마.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3 월 15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84호

붙임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여수시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이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통학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과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배치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우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하여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배치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시장
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우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
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장, 교

<p><u>제6조</u> · <u>제7조</u> (생략)</p>	<p><u>육지원청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u>제9조</u> · <u>제10조</u>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p>
-------------------------------------	---